

문서번호	교통행정과-10 681
결재일자	2016.3.1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보도여부	

주무관	자동차관리팀장	교통행정과장	건설안전교통국장
김도현	이광주	서종로	전결 03/14 김희동
협 조			

무단방치 자동차 범칙금 부과 계획



2016.3.14.

강 북 구 청
(교통행정과)

무단방치 자동차 범칙금 부과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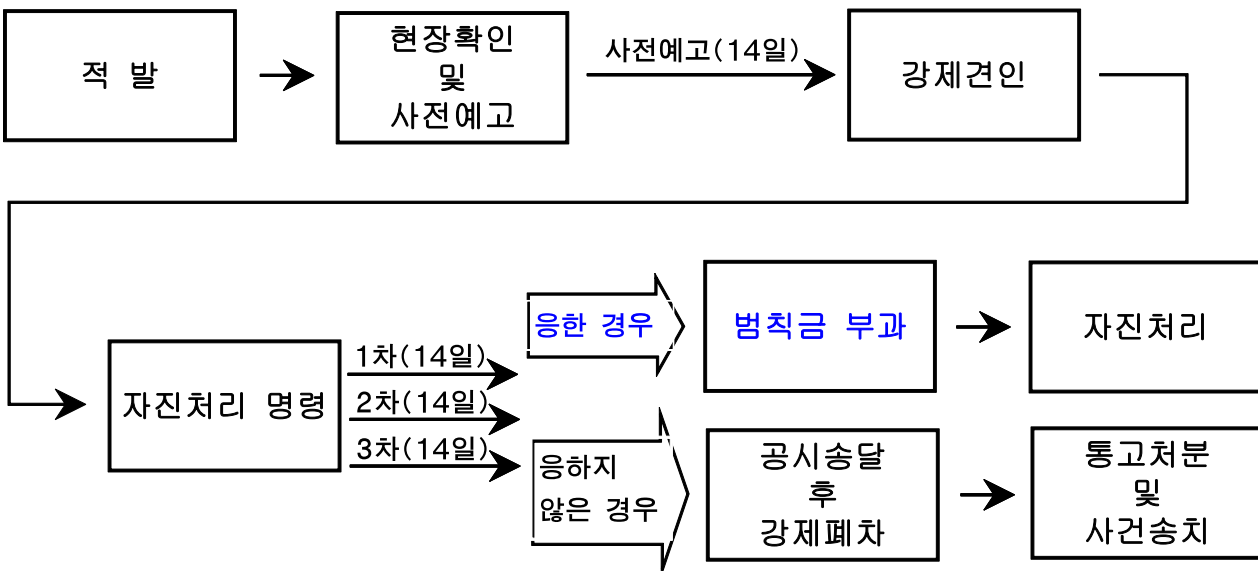
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대상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여 법 규정을 준수하고 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 관련규정
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 (자동차의 강제처리)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1조 (벌칙) 제8호
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 (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) 별표 3

II 현황

-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절차



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현황

2016년 3월 현재

년도	적발	견인 전 자진처리	견인	견인 후 자진처리	강제폐차	진행중
2012년	312	157	155	15	140	0
2013년	236	136	110	5	105	0
2014년	200	106	94	3	91	0
2015년	244	127	117	9	25	83
2016년	28	9	5	0	0	14

Ⅲ 자진처리 범칙금 부과

- 현행**
 - 견인 후 자진처리 시 범칙금 미 부과
- 변경**
 - 견인 후 자진처리 시 범칙금 부과

Ⅳ 향후 추진계획

- 견인 후 자진 회수 및 폐차 시 범칙금 부과
- 범칙금 납부 영수증 확인 후 견인 차량 출차 지시
- 2016년 적발된 자동차부터 적용

※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: 「첨부」 참조

V 기대효과

- 법규에 따른 행정으로 인한 신뢰성 증대 및 경각심 고취
- 구 세외수입 연간 약 1,300천원 증대 예상

첨 부 :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(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)

2. 자동차무단방치행위 (단위 : 만원)

범칙행위	해당법조문	범칙금액		
		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	승합·화물·특수자동차	
			경형·소형	중형·대형
가.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	법 제26조제1항 (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 81조제8호	20	20	30
나. 자진처리 명령 불 응한 경우		100	100	150

끝.